

NEOIMMUNETECH, INC. 이사회 규정

제 1 장 일반사항

제1항. 목적

NeoImmuneTech, Inc. (“회사”)의 본 이사회 규정(본 “규정”)은 회사의 이사회(“이사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항. 범위

본 규정과 회사의 기본정관(certificate of incorporation)(“기본정관”) 및/또는 부속정관(bylaws)(“부속정관”, 기본정관과 통칭하여 “정관”) 및/또는 관련 법령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정관 및/또는 관련 법령이 우선한다.

제 2 장 구성

제1항. 구성

이사회의 구성은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된다.

제 3 장 회의

제1항. 회의의 유형과 회의 통지

1. 이사회 회의는 정기(일반) 또는 특별(임시) 회의이다.
2. 이사회 회의는 정관에 따라 소집된다.

제2항. 회의 소집권한이 있는 자

1. 이사회 임시회의는 정관에 따라 소집된다. 통지 또는 통지 포기는 정관에 따른다.

제3항. 이사회 의결

1. 이사회 의결은 정관에 따라 채택된다.
2. 회의에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정족수는 정관에 따라 결정된다.
3. 한 명 이상의 이사회 구성원 또는 한 명 이상의 이사회 위원회 구성원은 정관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사회 회의 또는 그러한 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4항.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본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한, 의결을 위하여 이사회 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주주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2.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회사 또는 그 자회사들(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며 회사가 의사결정권한을 가지는 회사를 의미하며, 아래에서 “회사”에 대한 참조는 그러한 자회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의 일반 경영에 관련된 사항
 - (a) 회사의 기본 경영원칙의 결정 및 변경
 - (b) 신규 사업 또는 상품의 개발
 - (c) 예산의 자금조달 계획 및 운영
 - (d)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e) 이사회 위원회의 지정
 - (f) 인사정책에 대한 중대한 사항
 - (g)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규칙 또는 규정의 제정 및 폐지(회사의 임원에게 달리 위임되지 않는 한)
 - (h) 회사의 사업장의 설립, 이전 또는 폐쇄.
3. 회사의 재무와 관련된 사항:
 - (a) 최근 회계연도 회사의 총 자산의 5/100 이상의 금액 또는 회사의 총 자기자본의 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
 - (b) 최근 회계연도 회사의 총 자산의 5/100 이상의 금액 또는 회사의 총 자기자본의 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규모의 자산의 인수 및 처분

- (c) 회사 결손금의 처분
 - (d) 자본 증가 및 감소
 - (e) 사채 모집
 - (f)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Capitalization of reserves)
 - (g) 전환사채의 발행
 - (h) 신주인수권(warrants)의 발행
 - (i) 대규모 자금 조달 및 보증 제공
 - (j) 중요 자산에 대한 저당권 또는 질권의 설정.
 - (k)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 또는
 - (l) 배당금 지급
4. 이해관계자 거래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Interested Party Transactions)에 따른 승인을 요하는 거래.
5. 기타:
- (a) 최근 회계연도 회사의 납입자본의 5/100 이상의 금액이 문제되는 소송의 제기
 - (b) 관련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규정되는 기타 사항 또는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5항.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는 사항

다음 사항은 이사회 회의에서 보고되어야 한다.

1. 회사의 사업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

제6항. 이해관계자 거래

본 규정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 주요주주(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한, 한국거래소의 법률 및 규정상 정의에 따름; 이하 동일함) 및 그 특수관계인(Specially Related Person), 계열회사(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한, 한국거래소의 법률 및 규정상 정의에 따름) 및 회사의 감사 등과의 거래 승인에 대한 요건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정관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해관계자 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항. 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구성은 정관에 따라 결정된다.

제8항. 관계자의 출석

1. 이사회는 관련 임원, 직원 또는 외부인에게 이사회가 그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이사회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감사(부속정관에 정의됨)는 이사회 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9항. 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권

1. 이사가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관련 법령, 부속정관, 기본정관 또는 본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사회가 알게되거나 그러한 위반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 이사회는 그러한 이사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거나, 조사하거나, 설명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상기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그러한 이사에게 해당 행위를 중단 또는 시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항. 회의록

이사회 또는 이사회 위원회는 관련 델라웨어법 및 정관의 요건에 따라 회의록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11항. 실비

이사회는 이사회 각 구성원(상임이사 제외)에게 이사회 회의 참석 및 참여와 관련한 시간, 근로, 능력 및 노력에 대한 비용의 보상으로 여비, 숙박비, 식비 및 기타 최저활동경비와 관련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비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사회 회의 참석과 관련한 합리적 경비에 대한 보조금(Subsidized Expenses)(“실비”)으로서, 구성원의 거주지에 따라 연간 미화 24,000 달러 또는 한화 24,000,000 원(세전)의 총액을 지급한다. 실비는 원칙적으로 월별 분납으로 동등하게 지급되나, 실비 지급의 기간 및 시점은 해당 이사회 구성원 및 회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실비 항목은 (a) 시간, 근로, 능력 및 노력에 대한 보상, (b) 여비, (c) 숙박비, (d) 식비, 및 (e) 기타 최저활동경비로 분류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1년 5월 27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1년 7월 2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